

# 한우리교회 헌장

## 전 문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한우리교회 전 회원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계시되었고 침례교 신앙 고백서 (2000 Baptist Faith and Message)에서 선언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성경적으로 보존하고 전수하며,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 주신 한우리교회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본 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 명칭

본 교회는 한우리교회(Hanuri Korean Church)라 칭한다.

#### 제 2조 : 목적

본 교회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만이 모든 신앙과 믿음과 행동의 기준 됨을 믿으므로 성경에 기초하여 다음 다섯 가지 목적을 설정한다.

- (1)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 (2) 선교하는 공동체: 마태복음 28:18-20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각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을 전개한다.
- (3) 양육하는 공동체: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군이 되게 한다.
- (4) 교제하는 공동체: 본 교회는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장으로 교제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연령별, 소그룹별 단위로 각종 친교 사업을 벌인다.
- (5) 섬기는 공동체: 본 교회는 예수께서 보여 주신 본을 따라 회원 상호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제 3조 : 본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1) 침례

가. 침례의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수함으로써 교회 회원들 앞에서 행해지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담임목사가 침례의식을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인해 위임될 수 있다.

나. 본 교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온 자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본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경적 침례는 침수침례임을 가르쳐야 하며 본인이 침수 침례를 받기 원할 경우 이미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를 줄 수 있다.

(2)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의식은 고린도전서 11:23-29절 말씀에 따라 담임목사가 집행하고 운영위원이나 교역자의 보조를 받되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해서 동일한 신앙과 의식을 가진 목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

제 4조 : 소속

본 교회는 미 남침례회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와 텍사스주 침례회 총회인 BGCT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와 SBTC (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달라스 침례지방회(D.B.A.), 북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 텍사스 주 한인침례교회 협의회(K.B.F.T.), 그리고 텍사스주 한인침례회 북부 지방회에 가입하여 선교사업에 협력한다.

제 5조: 재단 법인

본 교회는 텍사스 주법에 의하여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다.

제 6조: 위치

본 교회는 122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U.S.A.에 위치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1조: 회원자격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 받고 침례(혹은 타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이어야 한다.

- (2) 18세 이상으로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참석한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침례교 신앙고백서에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 (3) 위의 (1)항과 (2)항)을 만족한 자로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새로운 회원은 후보를 통해 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2조: 회원의 임무

- (1) 각 정기 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독교인으로서 필요한 양육을 받으며 교제에 힘쓴다.
- (2) 헌금과 헌신, 그리고 봉사로서 선교 사업을 도우며 개인전도에 힘쓴다.

제 3조 : 회원의 권리

- (1) 교회 회원은 회원총회의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2) 교회 회원은 안수 집사 및 각 직분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교회의 제반 집회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조 : 회원의 자격 상실

- (1) 타 교회로 이적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결석한 자
- (3) 신앙과 믿음에서 탈선하여 교회 회원의 신분을 망각했다고 인정된 회원의 제명은 마태복음 18:15-17에 의거하여 사랑의 정신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차를 거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한다. 단 회원 자격이 상실된 된 자로서 뚜렷한 회개의 증거를 보이는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복권될 수 있다.

제 3 장 교역자 및 직원

제 1조 : 교역자라 함은 목사와 전도사로서 본 교회로부터 사례나 혹은 장학금을 받으며 말씀 및 양육 사역에 헌신하는 자를 말하며 직원이라 함은 교회의 행정 및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 제 2조 : 담임목사

### (1) 자격

담임목사(이하 목사로 칭함)는 디모데전서 3:1-7에 준한 자로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침례회 소속의 교회에서 안수 받은 자라야 한다.

### (2) 임무

가. 정기예배 인도, 하나님 말씀 전파, 주의 만찬, 침례 등 의식의 집행. 그리고 교회 회원의 목양 및 상담에 힘쓴다.

나. 회원총회, 운영위원회, 제직회의 의장이 되며 특별위원회 및 각 부와 기관을 통하여 교회 행정을 지도 감독한다.

### (3) 청빙

가. 목사의 청빙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을 결정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지원자에게 소정의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단수 추천한다.

다. 운영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를 인터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직회와 회원총회에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면 후보자를 교회에 초청하여 모든 회원들이 세 번 이상 후보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투표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4) 신임투표 및 사임

가. 회원총회는 청빙된 담임목사에 대하여 부임 후 1년과 부임 후 6년이 되었을 때, 두 번에 걸쳐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나. 신임투표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하며 불신임을 받으면 1개월 내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다. 신임투표로 불신임을 받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목사가 지도력의 상실이나 기타 윤리적인 문제나 신앙 및 교리의 문제로 인하여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집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목사의 사임을 의결하여 권면할 수 있으며 목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에 상정하여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목사의 해임을 가결할 수 있다.

- (5) 담임목사의 사역기간 및 은퇴  
담임목사는 특별한 사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65세까지 사역 할 수 있다.
- (6) 담임목회자에게는 매년 20일 동안의 정기휴가가 주어지며 매 6년마다 3개월 동안의 안식월을 주어 다음 사역을 준비하며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한다.
- (7) 교회는 담임목회자를 위한 은퇴연금 적립하여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제 3조 : 담임목사를 제외한 기타 교역자의 청빙, 직원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조 : 협동사역자

신학교를 재학 혹은 졸업한 자,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시무한 교역자로서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협동사역자로 임명하되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 목사안수

본 교회 또는 동일한 신앙과 이상 그리고 의식을 가진 교회가 목회를 위하여 목사의 안수를 요청할 시에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취 및 안수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 목사로 안수한다.

## 제 4 장 집 사

제 1조 : 집사에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다.

제 2조 : 안수집사

(1) 자격

사도행전 6:3과 디모데전서 3:8-13에 준한 자로써 본 교회에서 침례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남자로서 본 교회 서리 집사로 연속 3년 이상 봉사한 40세 이상의 자라야 한다. 또한 타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보자는 본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안수 집사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후보결정

가. 안수집사 후보는 (1) 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가 각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가결한다.

나.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소속된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혹은 장로로 안수 받고 본 교회에 이적해 온 자로서 1년 이상 출석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안수집사로 시무할 수 있으며 안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 단, 상기된 다른 교회에서 이적해 온 장로는 안수집사로 시무하되 장로로 호칭할 수 있다.

(3) 집사 안수

가.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교회가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안수 받을 수 있다.

나. 안수는 침례교 지방회에 속한 목사 약간 명을 초청하여 안수를 위탁한다.

(4) 안식년

안수 집사는 6년 이상 시무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을 휴무할 수 있다.

(5) 안수집사 수는 회원 20인 중 1인의 비율까지 선출할 수 있으며 필요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6) 임무

안수 집사는 평신도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의 목회를 적극 보조하며 신앙생활과 교회봉사의 솔선수범으로 회원들의 신앙성숙과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도모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교회 운영에 적극 이바지 한다.

(7) 징계

안수 집사가 평신도 영적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상실하거나 특별한 문제로 인하여 안수집사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안수집사의 직분정지 혹은 사임을 권면할 수 있으며 해당 안수 집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에 상정하여서 징계를 가결할 수 있다.

(8) 은퇴 : 안수 집사의 은퇴는 65세로 한다.

(단 본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 3조 : 집사장

#### (1) 선출

집사장은 안수집사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임기

집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일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임무

집사장은 담임목사 유고시 운영위원회 및 제직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와 제직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와 제직회, 그리고 각 부서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 역할을 한다.

### 제 4조 : 서리집사

#### (1) 자격

가. 사도행전 6:3절과 디모데전서 3:8-13절 말씀에 준한 자.

나. 본 교회 등록 된 교인으로서 1년 이상 경과 된 30세 이상인 자로서 침례(세례) 받은 자

#### (2) 선출과 인준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추천된 자에 한하여 교회 회중의 승인으로 최종 인준한다.

#### (3) 시무임기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4) 임무

서리집사는 교회의 각종 집회 및 예배를 준비하며 시설을 점검 관리 보존하고 교회의 일군으로서 신앙생활과 봉사와 섬김에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며 제직회의 회원으로써(삭제) 교회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5) 은퇴

집사의 은퇴는 65세로 한다.

## 제 5 장 회 의

### 제 1조 : 회원총회

(1) 회원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운영

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2주일 전에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한다.
- (3)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4) 회원총회의 개최는 참석인원이 정족수이며 안건의 가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건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5) 회원총회는 매년 예. 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담임목회자 청빙 가결, 직원의 인사 심의 가결, 직분자 징계 가결 그밖에 본 헌장이 정하고 있는바 제반 안건을 토의하고 가결한다.
- (6) 담임목사가 회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담임목사 유고 시 집사장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회원총회의 서기는 제직회의 서기가 겸임하도록 한다.

제 2조 : 제직회

- (1) 제직회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역자, 목자, **(목녀(추가))**, 여선교회 및 노인회 회장, 찬양팀장을 포함한 기타 기관장들로 구성된다.  
**(개정안) 제직회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역자, 목자, 목녀, 여선교회 및 노인회 회장, 찬양팀장을 포함한 기타 기관장들로 구성된다.**
- (2) 제직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 담임목사 혹은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다.
- (3) 임무
  - 가. 제직회의 기본 임무는 회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시행·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헌장이 정한 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도 있다.
  - 나. 제직회는 담임목사의 청빙을 의결, 회원총회에 추천하며 담임목사의 사임 권면·안수집사의 징계 의결 등 본 교회 헌장이 정한 바 직무를 수행한다.
  - 다. 제직회는 재정보고를 받으며 예. 결산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여 회원총회에 송부한다.
- (4) 담임목사가 제직회의 의장이 되며 담임목사 유고 시 집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 (5) 제직회는 서기를 선출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 보존하며 회원 상호간

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한다.

(6) 제직회의 개최는 참석인원이 정족수이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통과된다. 단 담임목사 청빙 건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제직회는 2주 전에 후보를 통하여 공고되어야 한다.

**(8) 은퇴**

노인회 회장을 제외한 제직의 은퇴는 65세로 한다.

**제 3조 :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안수집사로 구성하되 15인 이하로 구성되며 15인이 초과 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수집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2)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담임목사 유고시 집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

(3) 매월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가지며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4)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담임목사 청빙 건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및 교역자들의 사역을 보좌·자문하며 교회회원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제직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안건을 심의·토의하여 의결하거나 혹은 제직회에 송부하고 헌장에 명시된 제반 임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1조 : 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3-10명으로 구성된다.

**제 2조 : 청빙위원회**

담임목회자를 청빙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청빙위원회가 된다.

**제 3조 :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년도의 재정부장이 겸임하며 각부 부장과 수련회 준비위원

장, 그리고 건축위원장이 예산위원회 회원이 된다. 본 위원회는 다음 해의 예산을 세워 제직회와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4조 : 감사위원회

현금의 정확한 계수, 회계장부 기록 및 관리, 예산의 정당하고 바른 집행여부를 감사하여 제직회와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제 5조 : 건축위원회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매입하게 될 경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제 6조 : 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목적에 맞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7 장 각 부서 및 기관

제 1조 : 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되 각 부는 부장을 중심으로 2-10의 부원으로 구성된다.

제 2조 : 각 부장은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3조 : 예배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다.

제 4조 : 선교부

국내 및 해외의 선교 정보를 수집하며 교회의 선교 방향 및 정책을 결정. 지원한다.

제 5조 : 관리부

교회 건물 및 재산을 관리하며 보존한다.

제 6조 : 교육부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및 청년부의 예배 및 교육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역자 및 본 교회에서 행해지는 제반 교육.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제 7조 : 재정부

예.결산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본 교회의 헌금을 계수. 관리하고 재정을 예산에 따라 집행하되 그 상황을 회원총회와 제직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 새가족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새 신자 혹은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온 회원들이 본 교회에 새 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9조 : 친교부

회원들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연구·실행한다.

제 10조 : 그밖에 필요에 따라 봉사부, 전도부, 도서관리부, 장례부, 테이프사역부, 훈련양육부, 문서부, 장애인사역부, 영상사역부, 멀티미디어사역부, 음악부 등을 둘 수 있다.

제 11조 : 교회의 각 기관

교회기관으로 노인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학생부, 어린이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팀, 목사회, 한글학교, 유치원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13조 : 교회의 각 기관의 설립 및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8 장 재 정

제 1조 : 본 교회의 모든 재산 즉 제반 부동산, 자산, 현찰,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에 의하여 소유 관리 되며 부동산의 매매 및 취득, 그리고 건물의 신축은 회원총회의 가결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제 2조 : 본 교회 재정은 교회 회원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3조 : 헌금의 개봉과 계수 및 기록은 지정된 2인 이상의 재정부원의 입회하에

정확성을 기한다.

제 4조 : 예산의 확정과 집행

- (1) 본 교회의 예산은 예산위원회가 확정된 예산안을 제직회와 회원총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2) 모든 예산의 집행은 재정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 (3) 예산 외의 특별지출이나 특별기금 거출 제의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가결 되어야 하며 집행 후 제직회에 보고해야 한다.
- (4) 재정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1조 : 본 헌장에 기록되지 않은 조항은 미국 남 침례회의 조항에 따른다.

제 2조 : 회의 진행법은 통상례에 준한다.

제 3조 : 본 헌장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와 제직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문화 된 초안을 교회의 회원에게 2주 전에 배부하여 공지 시키고 회원총회에서 가결 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헌장의 효력은 통과일자부터 발생한다.

- 1) 1995년 1월 헌장 제정
- 2) 2002년 2월 10일 1차 개정
- 3) 2017년 11월 12일 2차 개정
- 4) 2023년 10월 20일 3차 개정